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현장 주체들의 불법행위(공정지연, 업무방해 등)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생략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8.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생략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u>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